

강사위촉규정

제정 2002. 7. 1.
 개정 2006. 6.
 개정 2012. 3. 1.
 개정 2014. 7. 1.
 개정 2016. 3. 1.
 개정 2018. 2. 28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(이하 '본교'라 한다)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강사의 자격 및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본교에 출강하는 강사 운영에 관하여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용어의 정의) ① 강사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17조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시간강사를 말한다.

② 강사는 상시근무를 하지 아니하되 본교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자로 교과목을 강의하고 그와 관련된 제반학사업무를 이행하는 비전임교원을 말한다.

제4조(자격) ① 강사는 담당교과목의 전공자로서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.

1. 강사의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다.

구분	대학졸업자·동등자격자			전문대학졸업자·동등자격자		
	연구실적 연수	교육경력 연수	계	연구실적 연수	교육경력 연수	계
강사	2	1	3	2	3	5

※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는 서로 대치할 수 있음.

2. 삭제

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스쿨강사위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사로 위촉 할 수 있다.

1. 교과목의 성격상 제1항의 자격이 있는 자를 위촉하기 곤란할 경우

2. 해당분야에 대한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전문가

③스쿨별 상황에 따라 필요시 강사를 공개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자격은 위 ① 혹은 ②항에 해당자로 한다.

제5조(위촉계약) ① 강사의 위촉은 스쿨강사위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스쿨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 계약한다.

② 강사로 위촉된 자는 강사 위촉계약서(서식 1)를 작성한다.

③강사의 위촉계약기간은 개강일부터 종강일까지로 한다. 다만 학기 중에 위촉되는 자는 위촉일로부터 종강일까지로 한다.

제6조(스쿨강사위촉심의위원회) ①스쿨에서는 강사를 위촉하기 위해 강사위촉심의위원회를 둔다.

②강사위촉심의위원회는 스쿨원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약간명의 각 전공별 교수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③강사위촉심의위원회는 강사 위촉 추천 대상자의 담당교과목과 전공과의 적합성, 학위, 실무경력 등을 심의하여 평가한 후 비전임교수 추천대상(서식 2), 강사위촉추천대상자 심사표(서식 3), 위원회 회의록을 담당부서로 제출한다.

④강사 위촉 추천 대상자를 심의함에 있어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촉 추천하지 아니한다.

1. 본 규정 제4조에 의한 자격미달 자
2.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
3. 직전학기의 출강률이 3분의 2에 미달한 자
4. 직전학기 수업평가 결과가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는 자(학기별 수업업무지침에 준함)
5. 교육자로서 품위를 손상한 사실이 있는 자
6. 기타 총장이 부적격하다고 인정한 자

⑤강사공개채용시 스쿨에서 위촉 추천 가능한 자를 파악하여 ③항의 내용으로 심의한다. 기타 세부 사항은 스쿨에서 정한다.

제7조(제출서류) ①강사는 위촉심의를 받기위해 각 스쿨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강사 이력서 1부(사진부착, 서식 4)
2. 최종학력증명서 1부
3.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1부
4. 주민등록등본 1부

②계속하여 2개 학기 이상 출강할 경우에는 제1항의 제출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.

제8조(주당 담당수업시간) 강사의 주당 담당수업시간은 최대 14시간까지로 한다.

제9조(보수 및 처우) ①강사의 강사료는 총장이 따로 정하며 강사료는 직전학기 수업평가 결과에 의해 차등 지급할 수 있다.

②대학은 강사 중 해당자에 한해 관련법에 의거 국민연금, 고용보험, 산재보험에 가입한다.

③강사와 관련된 기타 처우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10조(보칙) ①강사로 위촉계약한자는 본교의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등의 학사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.

②강사는 매 학기말에 수업평가를 받아야 하며 수업평가 결과는 재위촉계약 심사자료로 활용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당시 외래강사로 재직중인 자는 이 규정에 의해 위촉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2011-2학기 위촉계약된 외래강사는 이 규정에 의해 위촉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(서식 1)

강사 위촉 계약서

청강문화산업대학교 총장(이하 '갑')과 _____ (이하 '을')은(는) 강사 위촉에 따른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.

- 1. 계약기간 : 년 월 일 ~ 년 월 일 까지(개강일부터 종강일까지)
- 2. 소속전공(학과): 청강문화산업대학교
- 3. 직급 : 강사
- 4. 담당시수 : 주 시간
- 5. 강사료
 - 가. 지급일 : 매월 5일(첫번째 지급일 월 일)
 - 나. 지급액 : 시간당 원
 - 다. 지급방법 : 한학기(15주) 주별 강사료를 4주, 4주, 4주, 3주로 나누어 지급일에 지정한 계좌에 입금. 단, 결강시 강사료는 보강한 주에 지급.
- 6. 규정준수 : '을'은 본교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담당교과목의 강의(출강등록), 학사관리업무(강의계획서 작성 및 입력, 시험 및 성적평가, 성적 전산입력 및 수정, 출석부의 정리 및 제출)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- 7. 계약해지
 - 다음의 경우,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.
 - 가. '을'의 의사로 사직하고자 할 때
 - 나. 신체 및 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내용 수행이 곤란할 때
 - 다. 위촉에 결격 사유가 발생할 때
 - 라. '을'이 고의로 대학의 재산상 손해를 끼치거나 대학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심각한 직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때
- 8. 기타
 - 가. 본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대학 관련 규정을 따른다.
 - 나.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며,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 - 다. 개인사정 또는 법정공휴일, 학교행사일 등 실제 수업이 진행되지 아니한 수업에 대해서는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.

20 년 월 일

“갑” 주소 :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청강가창로 389-94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총장 유 (인)



“을” 주소 :

주민등록번호 :

전화번호 :

* 안내 : 강사님의 개인정보(주민등록번호 및 강의내역)를 “인터넷민원발급처, 국민연금관리공단, 고용보험공단”에 제공합니다.

(서식 4)

강사 이력서

인적사항

성명	한글		한자		(사진) (3.5cm×4.5cm)	
	영문					
주민등록번호	-		(만세)	국적		
주소	(-)					
연락처	주택			E-mail		
	직장			핸드폰		
현근무지 (직장)			직위		근무지 연락처	

학력사항

학위	학교명	학과	세부전공	학위명	평점평균	학위취득기간	학위논문
고등학교					-	-	
학사 과정					/	-	
					/	-	
석사 과정					/	-	
					/	-	
박사 과정					/	-	
					/	-	

(교육외)경력사항

재직기간	재직년월	재직기관명	직위	담당업무
~	년 월			
~	년 월			
~	년 월			
~	년 월			
~	년 월			

교육(강의)경력(※우리대학 제외)

년도	학기	학교(기관)명	학과명	주당담당시수	담당교과목	직위

우리대학 강의 경력

년도	학기	학과명	주당담당시수	담당교과목	수업평가

자격(면허) 및 상벌사항

자격 및 면허사항			상벌사항		
종 별	취득일자	시행기관	종 별	수여일자	시행기관

보험가입 및 타대학 출강 여부

사회보험 가입 여부				타대학 출강 여부(이번 학기)		
보험종류	사업장가입	지역가입	미가입(유보)	대학명	학과	시수
국민연금						
건강보험						
고용보험						

※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 줄을 추가하여 사용 가능합니다.

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습니다.

년 월 일

지원자 : (인)

청강문화산업대학교 총장 귀하